

# 명예졸업증서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일: 2019. 7.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59조에 따른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명예졸업증서의 수여 방법, 절차,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명예졸업증서수여라 함은 본교를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자 중에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졸업증서(별지 제1호 서식)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명예졸업증서 수여대상) 명예졸업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가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빛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
2.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뛰어난 사회활동으로 특정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을 이룩한 자

제4조(소속학부(과)) 명예졸업증서에 기재하는 소속학과(부)는 본교에 입학 당시 소속학과(부)로 하거나 수여대상자의 사회적 활동분야와 관련되는 전공으로 한다.

제5조(수여절차) ① 명예졸업증서 수여대상자는 해당 학장 또는 부서장이 추천한다.

② 명예졸업증서수여는 명예졸업증서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이 그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수여시기) 명예졸업증서의 수여시기는 본교 학위수여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캠퍼스 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3. 위원회 간사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장이 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주관부서) 명예졸업증서수여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제9조(명예졸업자의 관리) ① 명예졸업자는 학적부 기타사항란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받은 자’임을 기록하고, 기존의 학적부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② 명예졸업자에게 명예졸업에 관한 제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우) 명예졸업자에게는 해당 단과대학 동문회 및 본교 총동문회 가입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명예졸업증서수여의 취소)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총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증서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명예졸업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명예졸업증서수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명칭변경 및 부분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졸업증서

제 호

## 명예졸업증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년 월 본교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함으로써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투철한 경희가족정신과 애교심으로 본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활동을 통하여 본교 인지도 및 평판향상에 현저한 공적을 쌓았기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희대학교 총장 ○ ○ ○